



[정보공개서 등록번호]20240605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2024042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20240429

www.stonecreek.kr
stcrae32@gmail.com

스톤크릭(Stonecreek) 정보공개서

스톤크릭(Stonecreek)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

스톤크릭(Stonecreek)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면 지정로 1101

TEL. 0507-1359-7423

FAX. 0508-923-7423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스톤크릭(Stonecreek) 운영지원팀, 0507-1359-7423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스톤크릭 (Stonecreek)	스톤크릭(Stonecreek)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면 지정로 1101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2.01.14.	윤태원	0507-1359-7423	0508-923-7423
	법인등록번호	해당없음		사업자등록번호	659-08-0188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음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사항 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스톤크릭(Stonecreek)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스톤크릭(Stonecreek)	본점 풍광에서 따온 이름으로 절벽(Stone)과 강물(Creek)이 굽이쳐 지나가는 것을 Stonecreek으로 텍스트화 함
상 호	스톤크릭(Stonecreek) ()마일	예 : 스톤크릭(Stonecreek) 10마일
상표(서비스표)		상표등록 : 제 40-1890902 호
그 밖의 영업표지	 	절벽을 형상화 한 로고이며, 간판형상도 본 로고를 따르고 있음 스톤크릭(Stonecreek) 초성을 변형해 만든 상표로서 기업 대표 이미지로 활용

※ 당사의 상표, 간판, 마크, 로고 등에 대한 변경은 가맹점사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변동 될수 있으며, 이로 인한 영업표지 등의 변경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상호협의하여 비용의 분담비율을 결정하고, 가맹자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	-	-	-	-	-
2022년	-	-	-	663,158	-	-
2023년	-	-	-	835,929	-	-

*상기 매출액은 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가맹본부로 아래와 같이 증빙이 가능한 2개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별첨#1로 첨부합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영업표지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매출액	상한	하한
스톤크릭	-	-	-	-

당사는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으므로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윤태원	대표	2022.1.~현재	스톤크릭(Stonecreek) 대표	회사업무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해당사항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사항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스톤크릭(Stonecreek) (상표권)	가맹점 상호로 사용	2022.2.10. 출원 2022.7.19. 등록	출원 제40-2022-0026051호 등록 제4-1890902 호	윤태원	2032.7.19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권)를 사용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당사의 상표(특허) 범위는 해당 점포 소재지에 한해서만 허용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스톤크릭(Stonecreek)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1	-	-	-	1

6. 스톤크릭(Stonecreek)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	-	-	-	-	-	-	
서울	-	해당없음						
부산	-	해당없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	해당없음						
강원	1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8. 스톤크릭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스톤크릭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	5개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	-	-

당사는 가맹지역본부가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가 2023년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농협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협은행에 인터넷으로 예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시 별도의 자료를 드려 안내합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농협은행	대표전화(고객센터)	전지점 및 온라인 창구	1661-300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농협은행에 계약체결일을 포함하여 3일이 내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농협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스톤크릭(Stonecreek)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점포의 면적과 구조, 사용설비 등에 따라 상이함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입비	7,700 (330㎡ 이하)	계약 체결과 동시	개점전 가맹본부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만 반환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개점 전 본부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고 즉시 소멸 됩니다. 영업 중 점포면적이 상향 조정되어 가맹 비의 차이가 발생시, 당사에 차액을 지급 해야 합니다
	22,000 (330㎡ 이상)				

	초과)				
교육비	2,200		교육시작 3일전에 계약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총계	9,900 (330㎡ 이하)				
	24,200 (330㎡ 초과)				

***용어설명**

- 가입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입하는 대가
- 교육비: 가맹점이 오픈하기 전 가맹본부에게 받는 교육 비용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해당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5,000 (330㎡이하)	계약 체결 과 동시	- 계약종료 시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액을 공제한 후 상호, 서비스표 등 당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의 철거가 완료된 후 잔액 상환 - 별도의 이자는 없음	채무액이란 물건의 미지급금 및 본사가 공급한 물품의 파손시 복구를 위한 비용임
	10,000 (330㎡초과)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330㎡ 이하	330㎡ 초과
가입비	7,700	22,000
교육비	2,200	2,200
이행보증금	5,000 (부가세 해당없음)	10,000 (부가세 해당없음)
합계	14,900	34,2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4페이지 7)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33㎡, 10평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협력업체)	25,000	2,500	계약시협의	공사 전 계약취소	점포 면적/구조에 따라 상이
간판 및 사인물	(협력업체)	5,000		계약시협의	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 면적에 따라 상이
외부공사	(협력업체)	3,000	300	계약시협의	공사 전 계약취소	테크(10㎡이 내) 및 경사로
설비	가맹본부	15,000		계약시협의	설치 전 계약취소	설치 장비에 따라 상이
홀 집기	가맹본부	5,000		계약시협의	상품 미공급시	테이블, 가구 등
POS시스템	(협력업체)	1,600		계약시협의	상품 미공급시	설치 장비에 따라 상이
초도물품	가맹본부	1,500		물품공급 3일전	상품 미공급시	점포 면적에 따라 상이
홍보물	가맹본부	200		계약시협의	상품 미공급시	
합계		56,300	2,800			

* 현장의 실측 후, 여건에 따라 별도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도비용이 발생하는 주요 사항은 철거공사, 상하수도공사, 전기증설, 화장실용량, 냉난방기, 외부테라스 면적추가, 소방공사, 음향시설 등입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직영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이하 5,000천원, 33㎡초과 330㎡이하 10,000천원, 330㎡초과시 15,000천원을 청구하고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상권 및 유동인구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귀하의 입지선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나, 입지선정의 최종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경쟁력있는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디자인과 메뉴, 맛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으나, 점포의 입지는 매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점포의 입지를 결정합니다. - 당사는 해당 지역의 인구분포 및 이동, 특성, 주요 근린시설 및 경쟁업체 수 등을 근거로 가맹 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의사결정권과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고 매년 갱신 및 결과서를 가맹점내에 보관할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단,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서를 보관할 것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고 매년 갱신 및 결과서를 가맹점내에 보관할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스톤크릭(Stonecreek)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상기 제시된 설비는 신제품의 출시나 단종 등으로 변경 될 수 있고, 매장의 크기나 입지에 따라 더 큰용량의 설비로 대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설치가 필요한 설비는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 셋팅만을 요하는 설비는 자체조달하여도 무방합니다. 자체조달 하는 경우에도 초기 셋팅은 가맹본사에

서 지원합니다. 다만, 운영 중 추가 엔지니어링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출장비가 별도 청구 됩니다.

8)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7쪽 V-8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 220	다음달 5일	반환안됨	반환되지않음	상호,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를 후불 형식으로 지급하는 금전으로 반환될 수 없음
리스료	해당없음					
개점이후 교육비	가맹본부	협의에 따름	교육실시 3일전	교육실시 1일전 취소	교육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기본교육은 무료이며, 특별교육(경영,커피전문화)은 협의에 따름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필요시 협의 하여 분담	통지 후 7일 이내	비 시행시 반환	광고물 게시 후 반환되지 않음	
관촉분담금	가맹본부	필요시 협의하여 분담	통지 후 7일 이내	반환안됨	관촉활동 시작 후 반환되지 않음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상호협의하여 결정	통지 후 7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	가맹본부	상호협약하여 결정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 개선 비용	(협력업체)	업체와 별도 계약	별도약정			협력업체는 변경될 수 있음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협력업체)	업체와 별도 계약	별도약정			별도의 가맹본부 수수료는 없으며, POS업체 비용발생시 직접 청구 POS경쟁력에 따라 공급업체는 변경될 수 있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반환안됨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당사는 2023년 수취한 차액가맹금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계약이행	가맹계약상 모든 의무의 성실한 이행	수시	
재고관리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적정 재고유지	수시	
매장관리	품질, 청결, 서비스, 각종 설비·원부재료 관리 등 가맹본부가 사전에 통지한 매뉴얼 또는 세부운영규칙 등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표준화 유지	수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매장관리와 같이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직원이 점포 및 창고, 사무실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문날짜와 시간은 사전 협의하여 정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브랜드가치 유지 및 해당 가맹점사업자와 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보호를 위해 가맹본부는 일반 경영상태 외에도 영업에 있어 정치적 중립유지, 타인에 대한 혐오/비방, 선정적 게시물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종업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스톤크릭(Stonecreek) 마일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귀하는 양도일로부터 60일 전에 서면으로 당사에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당사에 동의를 받은 영업양수인은 영업개시 이전에 당사가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교육 및 계약이행보증금 납부가 완료되면 영업양수인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을 이행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원칙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하나,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당사가 부담합니다.

위에 규정된 영업표지의 철거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1일당 일금 일십일만원정(W110,000)을 지연 손해배상금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스톤크릭(Stonecreek) 마일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 차액가맹금 수취여부에 “자체”로 표기된 상품 및 원,부재료는 가맹본사에서 직접 제조하는 식품입니다.
- *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

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	—	—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스톤크릭(Stonecreek) 마일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스톤크릭(Stonecreek)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스톤크릭(Stonecreek)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브라이트 블렌드 (HOT/ICED)	왼쪽에 기재된 상품 외에 승인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본부에서 요구하는 위생/서비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1회위반: 구두경고 - 2회위반: 서면 시정요구 - 3회 위반: 물류공급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
블랙 블렌드 (HOT/ICED)		
스톤 카페오레 (HOT/ICED)		
블렌드 티 (HOT/ICED)		
싱글오리진 8종 (HOT/ICED)		
디카페인 2종 (HOT/ICED)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기 표에 기재된 메뉴 외에도 계절의 변화, 고객 만족도 제고,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가맹본부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스톤크릭(Stonecreek) 의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물품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구두시정요구 － 2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 3회 위반: 물류공급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
경쟁사 관계자			
소비자	법령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품목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할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아래와 같이 권장하고 있으며, 권장가격은 매장별 입지 및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품·서비스명	권장가격(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브라이트 블렌드 (HOT/ICED)	3,500	서면 또는 전화	판매가격 변경시 서로 협의하고 서면 동의를 얻음
블랙 블렌드 (HOT/ICED)	3,500		
스톤 카페오레 (HOT/ICED)	4,000		
블렌드 티 (HOT/ICED)	3,700		
싱글오리진 8종 (HOT/ICED)	원두, 상권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디카페인 2종 (HOT/ICED)	5,0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 또는 커피를 이용한 음료, 식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매장	스톤크릭(Stonecreek)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를 원칙으로 함 (고속도로, 철도, 지하도로 등으로 인해 도보거리가 현격하여 상권이 분리된 경우는 협의하여 지장물까지로 거리를 조정함) - 영업지역 내 특수상권(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지하상가, 학교 등 시설물의 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의 집합건물)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함 (가맹점 위치가 특수상권 내인 경우 해당 가맹점의 영업지역은 특수상권으로 한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서술하여 기재할 수 있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지도 상 날인한 영업지역 내에 스톤크릭 (Stonecreek)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지 않습니다. 단, 영업권 내의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추가 개점하거나, 폐점 후 재출점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

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스톤크릭(Stonecreek)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스톤크릭(Stonecreek)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656%	99.344%	0%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스톤크릭(Stonecreek)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40조 1항 각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스톤크릭(Stonecreek)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타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내의 정기적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서 제 41조 1항에 따른 물품공급 중단사유가 유예기간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1. 가맹점사업자가 연체한 원·부재료 대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 통지를 거부하거나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관련 계약서 제 41조 2항에 따른 즉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후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본 호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만 한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양 당사자 사이의 서면 합의, 경영방침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귀하에게 사전 통보한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할 것 - 양도전 잔존채무의 이행을 완료 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양수인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사에게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3개월이내 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서면통지 → 당사 담당팀 검토 → 서면회신 → 가맹점운영권 이전완료	직계 준비속에 한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대리행사	발생시 협의	—	—	—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통지 → 당사 담당팀 검토 → 서면회신 → 가맹점운영권 이전완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스톤크릭(Stonecreek)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 커피와 차 주스 등을 판매하는 업종 ○ 동일업종의 가맹본부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 경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스톤크릭(Stonecreek)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오전 11시~7시	연중무휴 원칙	상권에 따라 사전 협의

- * 제시된 영업시간은 본사와 사전협의하여 조정이 가능 합니다.
- * 개인사정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속 4일이상 영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 본사와 사전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	-	-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매장 및 근무자 위생상태	담당자 매장 방문 → 위생, 청결상태, 사입 등 관리항목 확인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기기장비			
식품위생			
서비스 및 레시피			
기타(비치서류 등)			
강제(전용) 품목 지정매입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스톤크릭(Stonecreek)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50%이상 동의)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100%	—		
판촉행사	할인행사	행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함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팸플렛 등 제작				

	기타 개별행사			
할인카드·멤 버십 제휴서비스	진행별 별도 협의			

*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지역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사 및 타가맹점사업자와의 가치제고 및 통일적 운영을 위해 광고 또는 판촉물에 대해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비밀유지 의무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별로 금이천만원(W20,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계약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별로 금오백만원(W5,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계약서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 처리하거나 스톤크릭(Stonecreek)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일천만원(W10,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계약위반으로 당사가 2회 이상의 시정조치에도 시정이 안 될 시에는 당사에 의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일금일천만원(W10,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일 금일십만원(W100,000 원)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이천만원을 한도로 1 일 당 오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점포사정에 따라 상이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계약체결 14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점포실측/설계	- 세부 투자비 산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계약 1일전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계약체결 당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약 3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일정협의하여 진행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및 현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관련계약 제48조 분쟁의 해결 절차를 따라 해결 합니다.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내부에 설치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자율분쟁조정기구)가 있을 경우 자율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항목	내용
점포환경개선 사유	- 점포의시설,장비,인테리어등의노후화가객관적으로인정되는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본부와 가맹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 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 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 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 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 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 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 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 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 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 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스톤크릭(Stonecreek) 마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교육	회사소개, 점포운영교육, 고객응대, 서비스교육 등	이론 및 실습교육	개점전 협의하여 진행	필수
재교육	신메뉴, 상품 및 서비스 품질관리 등	이론 및 실습교육	필요시 공지	필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스톤크릭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3일	2,2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필요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 및 훈련을 불참할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조항	내용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교육, 훈련 미이수로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미이행으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음
제20조(개점승인) 제21조(교육및훈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개점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음
제 40조 (계약의 갱신과 거절)	6호 교육 훈련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가맹사업의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직영점명	직영점 주소
1	강원	스톤크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1101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24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793,427	직영점 POS매출액

[별첨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2]

인근가맹점현황문서

■ 가맹사업법 제 7조 제2항에 따라 장래 가맹점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10개 가맹점 목록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 가맹점 전체 목록)을 제공합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 충북 ☐ 충남 ☐ 세종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순번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